
Policy and Law Report _Vol.177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3.3.8.~3.14.) -

March 15, 2023

법무법인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의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된 의안현황, 입법(행정)예고 법안 현황, 및 향후 국회의 주요 일정 등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을 통해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고객들께서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의 변경이나 고객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이나 정부정책들은 빠짐없이 선별하여 추후 고객들께서 불이익이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 (또는 격주) 발송되는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를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Letter 목차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2. 주요 입법(안) 동향
 - ① 공포 법안
 - ② 입법(행정)예고 법안
 - ③ 법률 발의안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	내용	일시
<p>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p>	<p>• <u>사이버보안 위협 증가, 국민과 함께 하는 현장 토론회 개최</u></p> <p>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도 제3차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 간담회* 일환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위기의 사이버보안 현장 토론회’를 개최함</p> <p><small>* 디지털 분야 국정과제 추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해 6월부터 연속 현장 의견 수렴 중</small></p>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챗GPT 등 새로운 보안위협에 대응하여 제로트러스트/공급망 보안체계 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LGU+ 고객정보 유출 등 계속되는 사이버침해사고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과 경제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일반인 참석자의 해킹피해에 대한 불안과 정부 정책추진 희망사항을 듣고 관련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 <p>② 사이버보안 혁신기업 육성을 위한 ‘신속확인제’ 및 해외진출 지원 등 활성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제 활성화, 해외 국가들과 지속적인 신뢰관계 유지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아세안 사이버 실드(ASEAN Cyber Shields) 등 실질적인 해외진출 협력방안 논의 <p>③ 현장에서 적시 활용 가능한 인재양성을 위해 시큐리티 아카데미 등 기업 주도형 교육과정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주도형 인재양성 과정인 ‘시큐리티 아카데미’, 잠재력 있는 인재에게 재능 사다리를 제공하는 화이트해커스쿨 및 최고급 개발인력 육성을 지원하는 ‘S-개발자’ 과정 등 신규 과정 개설과 함께 실효성 있는 인재양성을 위해 업계와 소통 강화 <p>④ 사이버보안 투자 확대를 위한 공시제도 활성화 등 기존 제도의 업계 건의사항 제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보호 공시제도 운영·확산,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지정·운영 등 기존 제도의 활성화 외에도 보안사고 기업에 대한 취약점 점검 이행 의무화 방안, 주요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다중인증 확대 필요 등 현장의 목소리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진행 	<p>2023-03-09</p>
	<p>• <u>「한계도전 R&D 프로젝트 추진」</u></p> <p><input type="checkbox"/> 추진배경</p> <p>• ‘쉬운 연구’, ‘성공하는 연구’, ‘나눠주기식 연구’와 같은 현실안주형 연구문화 속에서는 기술적·산업적 파급력이 큰 독창적 기술 확보가 곤란</p> <p>→ 실패 가능성이 커도 과감한 도전을 지원하는 ‘한계도전형 R&D’ 필요</p>	<p>2023-03-09</p>

부처	내용	일시
	<div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한계도전 R&D 의의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정책) R&D 100조 시대, 혁신적·도전적 R&D 체제로의 본격 전환 ② (제도) 고위험·고수익 R&D에 맞는 새로운 연구기획·평가기법의 도입 ③ (기술) 국가현안 해결, 신산업 창출에 기여하는 혁신적 기술 확보 <p>□ 추진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 : 임무지향형 테마) 국가 현안, 경제·산업 이슈와 관련한 기술적 난제 해결을 위한 도전적 문제(테마)를 정의 • (관리 : 책임PM 주관) 책임PM이 사업의 기획·선정·평가에 주도적 역할을 하며 상황변화에 따른 연구방향 수정(pivoting) 등 책임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은 기술적 대안 검토 후 단계별 목표(마일스톤)를 명확히 설정 * ‘평가’는 기술적 우수성을 중점 평가하는 전문성 기반 평가 추진 • (성과 : Tech to Impact) 학술적 성과 보다는 공공·민간 등 실제 수요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타사업 연계 등 기술사업화 지원 • (지원 : 전담조직) 연구재단 내 가치 ‘한계도전 전략센터’를 설치·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센터는 자율적 책임운영을 위해 기존 연구재단과 최대한 독립적으로 운영 <p>□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범사업) 한계도전 R&D 시범사업 과제기획(4월) 및 착수(7월) • (신규사업) 한계도전 R&D 신규사업 기획(4월) 및 연구테마 구체화(6월) 	
<p style="text-align: center;">금융 위원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M&A 지원 간담회」 개최 <p>금융위원회는 「기업 M&A 지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M&A 시장 동향, M&A 지원 필요성 및 향후 정책추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함</p> <p>기업 M&A는 기업의 성장·혁신을 촉진하고 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는 중요 수단으로 그간 PEF 제도 개선 등 기업 M&A를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국내 M&A 시장은 전반적으로 빠른 성장세* 시현</p> <p>* 국내 M&A 규모(조원) : (‘13)49.1 (‘15)94.9 (‘17)81.6 (‘19)141.9 (‘21)134.1</p> <p>그러나 M&A 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등이 잔존하고 있고, 최근 자금조달 여건 악화, 글로벌 경기 둔화 등으로 M&A 거래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임</p> <p>* M&A 규모 : [국제](‘21)\$3.1조 → (‘22)\$1.4조 [국내](‘21)134.1조원 → (‘22)78.7조</p>	<p style="text-align: center;">2023-03-10</p>

부처	내용	일시
	<p>기업 M&A 시장 관련 주요 동향으로는</p> <p>① 해외 M&A 시장 동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 규모) 거래규모는 '10년 이후 저금리 기조 하 지속 성장해왔으나, '22년에는 긴축 기조·경기둔화 등에 따라 급속히 위축 - (주요 투자자) 기업 등 전략적 투자자, PE, 재무적투자자(SPAC 등) 다양한 플레이어가 활동하며, 특히 PE의 영향력이 지속 증가하는 모습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data-bbox="373 680 826 927"> <p>< 글로벌 M&A 시장규모 ></p> <p>This chart shows global M&A market size from 2010 to 2022. The left Y-axis represents transaction value in billions of USD (조\$), and the right Y-axis represents the number of transactions in thousands (만건). Transaction value is shown as blue bars, and the number of transactions is shown as a green line with markers. Both metrics show a general upward trend until 2021, followed by a sharp decline in 2022.</p> </div> <div data-bbox="874 680 1276 927"> <p>< PE 바이아웃의 M&A 거래 비중 ></p> <p>This bar chart shows the percentage of M&A transactions that are PE buyouts from 2009 to 2021. The Y-axis represents the percentage (%). The ratio shows a steady increase over the period, starting around 5% in 2009 and reaching approximately 20% by 2021.</p> </div>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별 특성) 기술, 에너지, 산업재, 금융 등 영역에서 활발한 M&A 발생 - (ESG 강조) 최근에는 환경 등 ESG 관련 M&A(“ESG Deal”)가 빠르게 확대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data-bbox="411 1111 715 1375"> <p>< 산업별 M&A 관련 통계 ></p> <p>A donut chart showing the distribution of M&A transactions by industry. The largest share is Technology (기술) at 20.4%, followed by Energy (에너지) at 13.2%, Industrial Goods (산업재) at 13.1%, and Finance (금융) at 10.6%.</p> </div> <div data-bbox="766 1111 1299 1375"> <p>< ESG 관련 M&A 거래규모 ></p> <p>This line chart shows the transaction value of ESG-related M&A deals in billions of USD (조달러) from 2001 to 2021. The Y-axis ranges from 0 to 7. The value starts at 0.8 in 2001 and shows a significant peak of 6.0 in 2016, followed by a decline to 3.4 in 2021.</p> </div> </div> <p>② 국내 M&A 시장 동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 규모) 국제적 추세와 유사하게 M&A가 성장세를 보이다가 자금조달 여건 악화 등에 따라 '22년중 거래규모 하락 - (주요 투자자) 그간 PE 규제 완화 노력 등에 따라 PE 출자규모는 지속 확대 → PE가 기업 M&A 시장의 주된 참여자로 정착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data-bbox="373 1688 826 1935"> <p>< 국내 M&A 시장규모 ></p> <p>This chart shows the domestic M&A market size from 2010 to 2022. The left Y-axis represents transaction value in billions of KRW (조원), and the right Y-axis represents the number of transactions in thousands (천). Transaction value is shown as blue bars, and the number of transactions is shown as a green line with markers. Both metrics show a general upward trend until 2021, followed by a decline in 2022.</p> </div> <div data-bbox="874 1688 1276 1935"> <p>< PEF의 M&A 거래규모 및 비중 ></p> <p>This chart shows the transaction value and ratio of PEF M&A deals from 2012 to 2022. The left Y-axis represents transaction value in billions of KRW (조원), and the right Y-axis represents the ratio (%). Transaction value is shown as orange bars, and the ratio is shown as a green line with markers. Both metrics show a general upward trend until 2018, followed by a decline in 2022.</p> </div> </div>	

부처	내용	일시
	<p>- (산업별 특성) 기술·미디어, 제조, 소비재 등 중심으로 활발하게 M&A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향후 미래 신성장산업 중심으로 M&A 수요 지속 전망</p> <p>- (국경간 거래) 대형 딜 등에 따른 부침은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증가 추세</p> <p>< 산업별 M&A 거래 비중 ></p>  <p>< 국경간(Cross-border) M&A ></p>  <p>③ 기업 M&A 저해 요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층적 규제로 인한 M&A 시장 참여 제약 - 기업 구조조정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자본시장 역할은 미흡 - 새로운 산업 구조·시장에 대한 전략적 접근 부재 - M&A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 필요성 <p>이러한 M&A시장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고 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 M&A 지원 추진키로 하였으며 이를 위한 향후 정책 추진 방향으로는</p> <p>①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M&A 관련 규제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매수, IB의 기업 신용공여, 합병 등 기업 경영권 시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 <p>② M&A를 통한 기업구조조정 지원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를 위한 유동성 제공, 기업구조조정 수단 확충 등을 통해 M&A 방식의 기업구조조정 활성화 <p>③ 산업재편 수요에 대응한 전략적 M&A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유망기업이 미래전략산업 분야 등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략적 M&A 지원기능 강화 <p>④ 투자자 보호를 위한 M&A 제도의 정합성 제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장법인 합병제도 등 M&A 관련 제도의 투명성, 신뢰성, 공정성을 제고하여 일반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M&A 선진화 기반 마련 	

부처	내용	일시
	<p>• 「초거대 AI시대, 데이터 기반의 지속적 혁신·경쟁을 위한 금융데이터 정책 간담회」 개최</p> <p>금융위원회는 초거대 AI시대, 데이터 기반의 지속적 혁신·경쟁을 위한 금융데이터 정책 방향을 주제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데이터가 기업의 생존의 필수설비(Essential facility)가 되어가는 가운데, 기존 금융회사와 핀테크·빅테크 등이 지속 혁신·경쟁하고, 금융소비자 편익에 기여하는 금융 데이터 생태계 구축 방안을 모색한 바, 동 간담회에서는 데이터 개방·공유 등 데이터 정책 전반에 대한 금융회사, 빅테크·핀테크의 폭넓은 의견이 제시됨</p>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빅테크·의료 정보 등 핵심 비금융정보의 개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금융 이외 쏘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근거가 마련된 만큼, 금융 정보 이외에 빅테크·의료 등 비금융 정보의 개방을 통해 마이데이터 활용성 증대 - 정보제공기관의 정보전송 오류 감축 등 마이데이터 품질을 제고하고, 합리적 과금 체계를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상생·협력의 마이데이터 생태계 구축 <p>② 금융상품 비교·추천 대상 대폭 확대 및 신속한 대환대출 시스템 가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보다 국민의 자산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험·펀드 등으로 금융상품 비교·추천의 범위를 대폭 확대 -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대환대출 인프라의 조속한 구축을 통해서 금융권 내 혁신·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소비자의 편익 제고 <p>③ 결합데이터의 재활용 허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 결합시 시간·비용적 측면에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결합데이터를 안전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규제 환경 조성 <p><small>* 현재는 데이터전문기관이 결합데이터를 의뢰기관에 전송 후 지체없이 파기 (재활용 불가)</small></p> <p>④ 개인사업자 공공데이터 개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금융전문CB, 개인사업자CB가 금융이력부족자(thin-filer), 소상공인 등에 대해 보다 정교한 신용평가를 할 수 있도록 국세청·통계청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확대 개방 - 다양한 혁신서비스를 시도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 타부처 관계 법령 전반에 걸쳐 데이터 활용을 제한하는 과도한 규제 개선 <p>⑤ 신뢰받는 AI 활용 환경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AI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민·관·산·학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금융 AI·빅데이터 생태계 협의체」 운영 - 금융소비자 보호의 측면에서 데이터 편향성과 공정성 문제 등이 없도록 AI 활용 금융서비스의 신뢰성 검증 방안 검토 	2023-03-14

2. 주요 입법(안) 동향

① 공포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행정 안전부	<p>•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2023.3.14. 시행)</p> <p>2022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한 지방세 감면사항 중 농어업경쟁력 강화, 사회복지 서비스 강화, 연구개발 및 기업활동 지원 등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면제의 수혜대상을 확대하며, 신성장동력 분야 연구, 벤처기업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세 감면사항을 확대·신설하고, 그 밖에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p>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농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 지원 (제8조, 제9조제2항·제3항, 제13조제2항 및 제15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농지, 농지확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개간농지와 직접 임업을 하기 위하여 교환·분합하는 임야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및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출원에 의하여 취득하는 어업권·양식업권에 대한 취득세·등록면허세 감면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법」에 따라 취득하는 농지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농업기반시설용 토지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가 농수산물 유통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지방농수산물공사가 농수산물 유통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감면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p>② 사회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세제 지원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2조, 제22조의2 제2항제3호 신설, 제23조, 제28조제2항, 제30조제1항, 제36조의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감면 대상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확대하고, 감면율을 유형별로 차등화하며, 감면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 취득당시가액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 시 소득기준 제한 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하고, 감면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주가 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2023-03-14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자녀 양육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해당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그 배우자와 자녀가 법정상속분대로 이전받아 등록하는 경우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자동차의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법률구조법인, 한국소비자원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에 대한 감면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p>③ 연구개발, 기업활동, 벤처기업 및 지역개발 등에 대한 세제 지원 (제4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6조제3항, 제58조제4항제1호, 제63조제6항 신설, 제75조의5제1항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성장동력 또는 원천기술 분야를 연구하는 기업부설연구소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경감비율을 해당 기업부설연구소의 유형별로 확대하고, 그 감면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 신용보증재단이 신용보증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그 신용보증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경감비율을 1,000분의 375에서 100분의 50으로 확대하고, 그 감면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 철도사업면허를 받은 공공기관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고속철도차량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도록 함 - 인구감소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창업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함 <p>④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관리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농어촌공사의 경감 취득세 추징 규정 마련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신설) -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경감 취득세 추징 규정 마련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신설) - 이전공공기관의 임직원 등에 대한 경감 취득세 추징 규정 강화 (제81조제4항제2호, 같은 항 제3호 신설)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국토 교통부	<p>•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3.3.13. 시행)</p> <p>개발제한구역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등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는 행위에 농업인이 개발제한구역의 토지 또는 그 토지와 일체가 되는 토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보관·저장하려는 목적으로 농산물 저온저장고를 설치하는 행위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개정됨</p> <p>이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농산물 저온저장고를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른 농산물 저온저장고로 정하려는 것임 (제11조 신설)</p>	2023-03-13
중소벤처 기업부	<p>•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3.3.9. 시행)</p> <p>「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각각 분산되어 운영되던 벤처투자에 관한 사항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통합하여 규정됨에 따라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개인투자조합 등록 신청서 등 벤처투자 관련 서식을 삭제하려는 것임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각각 삭제)</p>	2023-03-09
개인정보 보호 위원회	<p>•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2023.8.15. 시행 예정, 일부 개정규정은 별도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예정)</p> <p>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본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또는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술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인공지능 등을 이용한 자동화된 결정이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정보주체가 이를 거부하거나 해당 결정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p> <p>종전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이관된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이 온라인 사업자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특례로 규정되어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온라인 사업자와 오프라인 사업자 간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 불필요한 혼란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p> <p>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는 경우를 확대하여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p>	2023-03-14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기준 마련 (제2조제7호의2 및 제25조의2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CTV와 같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외에 드론, 자율주행 자동차 등을 이용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의를 마련함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공개된 장소에서 업무를 목적으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할 수 없도록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촬영할 수 있는 경우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으로 정하며, 촬영을 하는 경우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등으로 촬영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는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기준 등을 정함 <p>② 정보주체는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하는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결정이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을 거부하거나 해당 결정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제4조제6호 및 제37조의2 신설)</p> <p>③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하여금 매년 공공기관 등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제11조의2 신설)</p> <p>④ 종전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와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함 (제15조제1항제4호·제5호, 같은 항 제7호 신설)</p> <p>⑤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및 국외 이전 중지 명령 (제28조의8 및 제28조의9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전에는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또는 국제기구가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수준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보호 수준을 갖추었다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등에도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여 국외 이전의 요건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다양화 함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국외 이전을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 <p>⑥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근거 및 사유를 규정하고, 지정취소를 하려는 경우 「행정절차법」상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함 (제33조제7항·제8항 신설)</p>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p>⑦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본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또는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술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전송 요구의 요건 등을 정함 (제35조의2 신설)</p> <p>⑧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한도액을 종전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함 (제39조제3항)</p> <p>⑨ 이 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관하여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자료제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비밀유지명령을 하거나 또는 그 명령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제39조의3부터 제39조의5까지)</p> <p>⑩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이관된 특례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던 것을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하여 동일 행위에 동일 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종전의 특례 규정을 삭제하고 이를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일반 규정으로 정비함 (현행 제39조의3부터 제39조의8까지 등 삭제)</p> <p>⑪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조정제도 개선 (제43조제3항, 제4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제47조제3항·제4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쟁조정의 통지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분쟁조정에 참여하여야 하는 대상을 공공기관에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하고, 분쟁조정의 당사자가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아니할 경우 종전에는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하던 것을, 앞으로는 조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분쟁조정제도를 개선함.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기구의 소속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사건과 관련된 장소에 출입하여 자료를 조사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고, 관계 기관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p>⑫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상한액을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함 (제64조의2 신설)</p> <p>⑬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그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제75조제2항제16호 신설)</p> <p>⑭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하는 규정을 위반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삭제함 (현행 제75조제3항제1호 삭제)</p>	

②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행정 안전부	<p>•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 <p>유휴 공유재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일반재산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일반재산 위탁관리 수탁기관을 추가로 지정하고, 신속한 재난 복구 지원 및 공유재산 사용자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 현행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p>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신속한 재난복구 지원을 위한 수의계약 범위 확대 (안 제13조제3항, 제29조제1항) - 재해 복구나 구호의 목적으로 사용허가·대부하는 경우에는 대상을 제한하지 않고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개정</p> <p>② 사용료·대부료·변상금 분할납부 조건 완화 (안 제14조제8항, 제32조제2항, 제81조제1항) - 사용료·대부료의 분할납부 횟수를 최대 연 6회에서 연 12회로 확대하고,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연 100만원 초과에서 50만원 초과로 하향하는 한편, 변상금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100만원 초과에서 50만원 초과로 하향</p> <p>③ 지방자치단체조합에게 사용허가시 사용료 면제근거 신설 (안 제17조제5항, 제75조) -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 지방자치단체조합에게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거나 물품을 대부할 경우, 행정재산 사용료 및 물품 대부료 면제 근거 마련</p> <p>④ 일반재산 위탁관리 수탁기관 추가 지정 (안 제48조의2) - 일반재산 위탁관리 수탁기관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추가 지정</p> <p>⑤ 변상금 부과 규정 명확화 (안 제81조제5항, 제6항) - 변상금을 미루거나 나누어 내리는 경우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변상금을 징수하지 않는 요건을 명확화</p> <p>※ 의견 제시기간 : 2023/3/9(목)~4/18(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행정안전부(회계제도과)로 제출</p>	2023-03-09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산업통상 자원부	<p>•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 <p>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수소전문기업 제도를 운영중인 바, 국내 수소산업의 시장 규모를 고려할 때 수소전문기업 확인 기준이 높아, 그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역량있는 수소기업과 스타트업 등을 발굴하여 육성하고자 함</p>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수소전문기업의 지정 기준 (안 제2조의 제1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소산업은 현재 초기 시장형성 단계로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해 벤처 등 성장 잠재력이 큰 기업을 보다 적극 발굴할 필요가 있음 - 수소전문기업 확인 기준인 총 매출액 기준을 현행 20억에서 10억으로 낮추고, 총 매출액 20~50억원 미만 구간의 수소사업 매출액 비중을 현행 50%에서 40%로 조정하고자함 - 수소전문기업 확인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다수의 역량있는 수소기업이 수소전문기업으로 지정될 것으로 기대 <p>※ 의견 제시기간 : 2023/3/8(수)~4/17(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수소산업과)로 제출</p>	2023-03-08
	<p>•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 <p>화재 발생 시 효율적인 대응을 통해 대규모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타 직군의 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자간 겸직을 금지하도록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기업규제완화법) 제29조제2항제4호, 제29조제3항제6호 및 제30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을 개정하여 2023.1.3일 공포함</p> <p>개정 기업규제완화법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경우를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전담이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명시한 점과 개정이유에 의거하여, 위임받은 내용을 동 시행령 제12조제8항에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서 정한 특급 및 1급 소방안전대상물’로 규정함</p>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소방안전관리자 고용의무 완화의 예외 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규제완화법 제29조제2항제4호, 제29조제3항제6호 및 제30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에 소방안전관리자 고용의무 완화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대통령 	2023-03-10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p>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이 추가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12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29조제2항제4호, 제29조제3항제6호 및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말함 <p>※ 의견 제시기간 : 2023/3/10(금)~4/21(금)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산업통상자원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제출</p>	
환경부	<p>•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 <p>환경보전협회의 명칭과 법인격을 각각 한국환경보전원과 재단법인격으로 변경하고 기관 운영의 공공성 및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의 지원 및 지도·감독 근거를 마련한 「환경정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8918호, 2022. 6. 10. 공포, 2023. 6. 11.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p>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한국환경보전원의 출연금·보조금의 지급 등 절차 규정 (안 제25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환경보전원이 법에 따라 출연금·보조금을 요구하려면 매년 5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출연금·보조금 예산요구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연금·보조금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예산안에 편성하고, 해당 예산이 확정되면 한국환경보전원에 통보하여야 함 - 한국환경보전원이 출연금·보조금 지급을 받으려면 지급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계획 및 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한국환경보전원에 지급하여야 함 - 개정에 따라 규정 필요성이 없어진 환경보전협회의 회원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p>② 한국환경보전원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신설 (안 제26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환경보전원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에 환경보건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 관련 사업, 측정대행계약 관리 관련 사업, 그 밖에 한국환경보전원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신설함 	2023-03-08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p>③ 한국환경보전원의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사항 규정 (안 제27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환경보전원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승인을 받으려면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한국환경보전원이 승인받은 사업계획서나 예산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를 기재한 서류 등을 제출하고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한국환경보전원은 매 회계연도에 대한 사업실적 보고서와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 의결을 받은 수입·지출의 결산서 등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p>※ 의견 제시기간 : 2023/3/8(수)~4/17(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환경부(환경교육팀)로 제출</p>	
국토교통부	<p>•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 <p>자동차대여사업은 무분별한 영업행위 확산 방지를 위하여 자동차가 등록된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에서만 영업을 허용하고 있어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대여한 후 타 영업소에 반납할 경우 반납된 자동차는 타 영업소에서 15일을 초과하여 주차할 수 없고 최초 대여장소로 이동한 후에 영업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소비자가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편도 이용하는 경우 자동차의 복귀 택송료를 일부 부담하는 경우가 있는 등 소비자의 이용불편 및 요금 부담 등이 초래됨에 따라</p> <p>이에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편도로 이용한 경우 15일 이내 최초 대여장소로의 편도 영업(일회성 회차 영업)을 허용하여 이용자 요금 인하 및 이용 편의 등을 제고하고자 함</p>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대여사업용자동차를 편도로 이용한 경우 15일 이내 최초 대여장소로의 편도영업을 허용 (안 제64조제3항)</p> <p>※ 의견 제시기간 : 2023/3/13(월)~4/22(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국토교통부(모빌리티총괄과)로 제출</p>	2023-03-13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중소벤처 기업부	<p>•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p> <p>「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9181호, 2023.1.3. 제정, 2023.7.4. 시행)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p> <p>주요 내용으로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스마트제조혁신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내용과 기본계획의 확정이나 변경 시 공고함을 규정함 (안 제3조~제4조) ② 스마트제조혁신 추진기관의 지정 내용과 업무 및 스마트제조혁신과 관련한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범위를 규정함 (안 제5조~제7조) ③ 스마트제조혁신 촉진, 기술경쟁력 제고 지원사업에 포함되는 내용을 규정함 (안 제8조~제9조) ④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의 신청 및 수준확인 절차를 규정함 (안 제10조) ⑤ 제조데이터 활용 지원사업 계획수립·시행 절차와 전문기관의 지정 내용 및 업무를 규정함 (안 제11조~제13조) ⑥ 디지털 클러스터 구축, 공급기업 육성, 보안 강화, 전문인력의 양성 및 공급, 근로환경 개선 지원사업에 포함되는 내용을 규정함 (안 제14조~제18조) ⑦ 스마트제조혁신 우수기업등의 선정 및 지원 내용을 규정함 (안 제19조) ⑧ 국제협력 및 해외 협력모델 개발 촉진 지원사업에 포함되는 내용을 규정함 (안 제20조~제21조) ⑨ 스마트제조혁신 규제개선 신청 절차 및 심의기준을 규정함 (안 제22조) ⑩ 추진기관, 전문기관의 업무수행 상황 등에 대한 자료 제출·보고를 규정함 (안 제23조) ⑪ 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기준, 권한의 위임·위탁 등 법률의 보칙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함 (안 제24조~제26조) <p>※ 의견 제시기간 : 2023/3/8(수)~4/17(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제조혁신과)로 제출</p>	2023-03-08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p>•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p> <p>「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9181호, 2023.1.3. 제정, 2023.7.4.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p>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추진기관 지정서,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신청서,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 전문기관 지정서, 규제개선 요청서 등 스마트제조혁신 지원과 관련된 각종 신청 및 지정 서식을 규정함 (안 제2조~제5조)</p> <p>※ 의견 제시기간 : 2023/3/8(수)~4/17(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제조혁신과)로 제출</p>	2023-03-08
식품 의약품 안전처	<p>•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 <p>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중 사망일시보상금에 대해 연령, 기저질환 등의 사망 발생과의 인과성을 고려한 지급 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p>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진료비의 지급 기준 명확화 (안 별표) - 진료비의 지급 기준 및 범위 중 본인부담금상한액을 지급 결정 당시 산정된 금액으로 명확히 하고자 함</p> <p>②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사망일시보상금의 지급 기준 세분화 (안 별표) - 의약품 부작용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피해구제급여 지급의 기준 중 사망일시보상금의 지급 기준에 부작용과 복합적으로 연령, 기저질환 등이 사망 발생과 인과성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려한 보상금액을 정하여 지급가능하게 함으로써 그 지급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p> <p>※ 의견 제시기간 : 2023/3/9(목)~4/18(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안전평가과)로 제출</p>	2023-03-09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금융 위원회	<p>•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 <p>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신속하게 차단하여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p>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권한 확대 (안 제6조의5제1항제5호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요청 권한을 확대하여 서민금융진흥원장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p>※ 의견 제시기간 : 2023/3/13(월)~4/24(수)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금융위원회(가계금융과)로 제출</p>	2023-03-13

③ **법률 발의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p>법제사법 위원회</p>	<p>•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의원 등 10인)」</p> <p>현행법에 따르면 권리의 불행사로 인한 채권의 멸시효는 10년(3년 단기, 1년 단기), 소멸시효 중단사유로는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으로 규정하고 있음</p> <p>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재판을 청구하여 승소판결을 받거나 소제기 이전에 집행법원으로부터 가압류·가처분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승소 이후에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방법도 있음</p> <p>그런데 채권자가 승소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없거나 재산의 소재 파악이 어려운 경우 강제집행이 어려우며, 이 경우 승소판결을 받은 채권자라도 채무자의 사정으로 소멸시효가 도과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채권자는 반복적으로 소를 제기해야 함</p> <p>이 같은 채권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산명시신청을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추가하고자 함. 「민사집행법」에 따른 재산명시절차는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는 절차이며, 압류에 버금가는 채권자의 강력한 권리 실현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며,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인용결정을 받은 채권자에 대해 권리 위에 잠자는 자로 보아 시효소멸의 제재를 가하는 것은 시효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어 재산명시신청에 확정적 시효중단 효력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음</p> <p>이에 재산명시신청에 확정적인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채권자의 부담을 완화하여 채권의 실현을 도모하고자 함 (안 제168조, 제170조, 제170조의2 및 제174조)</p>	<p>2023-03-08</p>
	<p>•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p> <p>현행법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가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p> <p>하지만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의 경우에는 해외로 도피하더라도 시효가 정지된다는 규정이 없어, 재판 중 장기간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에 대한 처벌에 공백이 있었음</p> <p>실제로 대법원은 1997년 5억 6천만원 상당의 사기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이 국외로 출국해 2020년까지 재판이 확정되지 못하자 15년의 재판시효가 완성됐다며 면소 판결을 한 바 있음. 재판시효는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15년에서 25년으로 늘었지만, 여전히 ‘재판 중 국외 도피’시 아무런 제한 없이 시효가 진행된다는 지적이 있음</p>	<p>2023-03-08</p>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p>이에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 완성 간주 기간(25년)의 진행이 정지되도록 규정하고자 함 (안 제249조제2항 단서 신설)</p>	
<p>정무 위원회</p>	<p>•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의원 등 11인)」</p> <p>현행법은 피해자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등을 증명하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에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 원리에 입각하여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경감하기 위하여 2017년도에 개정된 것임</p> <p>그런데 현행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국내에서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로 인해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제조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남</p> <p>이와 관련하여 자동차와 같이 고도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조·가공된 제조물의 경우 수입업자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입증책임을 제조업자가 부담하여야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p> <p>이에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로서 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물을 제조·가공한 제조업자가 외국인으로서 국외에 있고, 해당 제조물을 국내에 수입한 제조업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p> <p>그리고 피해자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는 영상자료, 기록물 등을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당시에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없었다는 사실을 자동차 제조업자 등이 입증하여야만 손해배상책임을 면(免)하도록 특례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4조의 2 신설)</p>	<p>2023-03-10</p>
<p>기획재정 위원회</p>	<p>•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의원 등 11인)」</p> <p>현행법은 통합투자세액공제 규정을 두어 신성장 원천기술이나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금액의 일부를 각각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음</p> <p>그런데 2020년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 중 반도체 수출은 992억 달러로 전체 산업 수출의 19.4%를 담당하고 있고, 2013년부터 수출 비중 1위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의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부족한 상황으로, 향후 반도체 산업의 국가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p>	<p>2023-03-09</p>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p>이에 반도체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20(중소기업은 100분의 30)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24조)</p>	
	<p>•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2인)」</p> <p>현행법은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 중 배기량 1천cc 미만의 자동차(경형자동차)를 소유한 자가 해당 자동차 연료 사용을 위하여 유류를 구입하는 경우 해당 유류에 부과된 개별소비세액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특례의 일몰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p> <p>하지만 최근 친환경산업 육성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대한 정부 정책을 고려하면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환급 특례는 계속적으로 유지해야할 필요가 있음</p> <p>이에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액 환급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11조의2)</p>	2023-03-10
	<p>•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1인)」</p> <p>반도체 산업은 미래산업의 경쟁력과 안보를 좌우하고 있으며, 탈세계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각종 첨단 제조산업 기술패권 경쟁의 중심임</p> <p>또한 현재 세계 반도체 공급망은 글로벌 분업화의 종말이라는 새로운 질서에 직면해 있고, 미·중 무역전쟁,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공급망이 취약해진 상황에서 반도체 산업의 우월적 지위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음</p> <p>그리고 첨단기술의 결정체인 반도체는 산업뿐 아니라 안보차원에서도 전방위적인 경쟁 우위 전략이 필요한 시기임</p> <p>이에 미국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자국 울타리 내에 두기 위한 전략으로 2022년에 「반도체와 과학법」,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연이어 제정하였고, 일본은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제정하였음</p> <p>중국은 ‘반도체 굴기 2025’를 발표하면서 약 200조원에 이르는 자금을 투자하고 반도체 기업에게 최대 10년간 소득세를 면제할 예정이며, 유럽도 「유럽반도체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중임</p>	2023-03-14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p>그러나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 지원 정책은 경쟁국들의 파격적인 지원 정책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현저하게 부족한 수준으로 관련 산업계 등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p> <p>이에 반도체 산업 등 국가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반도체 관련 시설 등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시 적용하는 기본공제율을 대기업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20, 중견기업은 100분의 25, 중소기업은 100분의 30으로 상향하여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임 (안 제24조제1항)</p>	
<p>과학 기술정보 방송통신 위원회</p>	<p>•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의원 등 11인)」</p> <p>2010년부터 시행된 도매제공 의무제도는 이동통신 재판매 사업, 이른바 “알뜰폰” 시장의 양적인 성장에 일조하였음. 이제 알뜰폰 가입자는 우리나라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16.9%를 차지하는 등 국내 이동통신 시장의 중요한 축으로 인정받고 있는 상황임</p> <p>다만, 알뜰폰 시장의 양적 성장이 질적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음. 알뜰폰 시장의 일각에서는 이동통신 시장에서 퇴출된 다단계 영업 방식을 통해 이통3사보다 높은 요금제로 판매되고 있거나,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도 이용자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기도 하는 등 알뜰폰 시장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질적 성장 또한 도모해야 할 필요가 있음</p> <p>또한, 그동안 도매제공 의무제도가 거듭된 기한의 연장을 거쳐 12년간 지속되어 왔으나, 일몰 연장을 두고 이해관계자들의 소모적인 갈등도 반복되고 있어 현재의 도매시장 규제 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p> <p>이에 정부가 도매 및 재판매 시장 경쟁상황 · 이용자 만족도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내실 있는 알뜰폰 정책을 수립하고, 도매제공사업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도 그 시한을 3년으로 한정하되, 평가 결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최대 2년에 한하여 의무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평가 과정에서 도매대가 산정 등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 등이 확인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 제재토록 함으로써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이용자 편익을 제고하고자 함 (안 제38조의2 신설)</p>	<p>2023-03-08</p>
	<p>•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의원 등 13인)」</p> <p>다양한 모바일 플랫폼 서비스가 경쟁하는 상황에서, 일부 앱 마켓사업자는 운영체제, 앱 마켓, 결제방식 등 모바일 생태계의 핵심적인 플랫폼 및 서비스를 수직 계열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획득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진입 또는 정당한 사업 영위를 제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p>	<p>2023-03-08</p>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p>이에 따라,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및 이용자 선택권 관점에서 합리적 규율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p> <p>이에 주요 앱마켓사업자들이 운영체제, 앱마켓, 결제방식 등 주요 모바일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수직 계열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정당화 사유로 들고 있는 보안 문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하여금 앱마켓, 결제방식, 모바일 콘텐츠 등에 대한 보안성을 평가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22조의9제3항 신설),</p> <p>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이용자가 모바일콘텐츠를 이용하는 경로, 방식 등을 폭넓게 선택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며 이를 위한 협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 (안 제22조의9제4항 신설 등)</p> <p>아울러 앱마켓사업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운영체제를 제작 또는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이용자 또는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앱마켓 등 특정 앱마켓 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강제하는 행위와, 자동차 등 다른 단말장치에서 다른 앱마켓을 통하여 설치한 앱의 구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앱마켓 등 모바일 생태계 전반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 (안 제50조제1항제12호, 제13호 신설)</p>	
	<p>•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의원 등 10인)」</p> <p>스마트폰의 확산과 함께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를 통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이 보편화·일반화되면서 앱을 유통하는 앱마켓이 이용자와 앱개발사를 연결하는 앱생태계 전체의 관문으로 성장하였으며, 앱마켓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가진 일부 앱마켓사업자가 관련 생태계를 관장하는 게이트키퍼(Gatekeeper)로 부상하였음</p> <p>이에 따라 앱마켓 시장의 유효경쟁 확보가 모바일 앱생태계 전체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 정책 과제로 대두하였음. 우리나라는 2021년 인앱결제방지법을 세계 최초로 시행하였으며, 유럽연합의 EU집행위원회도 디지털마켓법(Digital Market Act)에 합의하는 등 모바일콘텐츠의 공정한 유통을 위한 법제도 수립이 가시화되고 있음</p> <p>특히, 이러한 상황에서도 앱마켓사업자가 자사 앱마켓을 통한 매출액, 다운로드 수를 기준으로 발표하는 앱의 순위가 해당 앱의 매출이나 다운로드 수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앱개발사는 매출액 또는 다운로드 수의 분산을 막기 위해 이용자가 많은 일부 앱마켓에만 입점하는 악순환이 발생하여 앱마켓 시장의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p>	2023-03-10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p>이는 다시 앱마켓사업자의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다른 앱마켓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 대한 혜택 제공 등 시장경쟁 제한과 이에 따른 이용자 편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음. 나아가 일부 게임사업자들은 과금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모바일콘텐츠를 개발하여 매출액 기준 순위를 높이는데 적극 활용함으로써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건전한 모바일콘텐츠 이용문화를 저해하는 사회적 문제도 발생함</p> <p>이에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앱마켓사업자가 자신이 중개하는 앱에 대하여 매출액, 다운로드 수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순위를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율함으로써 앱마켓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모바일콘텐츠 시장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도모하고자 함 (안 제22조의10, 제27조제1항제3호의6 신설 등)</p>	2023-03-10
	<p>• 「<u>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의원 등 10인)</u>」</p> <p>최근 통신시장에서 이용조건, 부가서비스, 계약형태 등에 따라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체계가 복잡해짐에 따라 이용자가 이용조건, 결합할인 등을 개별적으로 비교하고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임</p> <p>이에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용자와의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이용자의 이동통신서비스 수요와 이용행태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를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려는 것임 (안 제7조제4항·제5항 및 제22조제4항제5호의2 신설)</p>	2023-03-14
산업통상 자원중소 벤처기업 위원회	<p>• 「<u>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2인)</u>」</p> <p>현행법은 환경친화적인 자동차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기술개발 지원, 연료 생산자나 충전시설 등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도입하고 있음</p> <p>그런데 동 법이 계획수립이나 물리적인 지원대책 등에 편중되어 있어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친환경 자동차 중심으로 자동차 사업구조를 개편하는데 핵심적인 전문인력 양성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p> <p>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산업 전환으로의 핵심 현안인 전문인력의 양성계획과 교육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컨설팅 전문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내연기관 자동차 중심의 자동차산업 생태계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하려는 것임 (안 제7조의2 및 제7조의3 각각 신설)</p>	2023-03-08

소관위	법률안	제안일자
	<p>•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0인)」</p> <p>현행법은 신·재생에너지 연료의 적절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재생에너지 연료의 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고, 신·재생에너지 연료사업자로 하여금 제조·수입·판매하는 신·재생에너지 연료가 품질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질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 의무를 두고 있음</p> <p>그런데 최근 미국, EU 등은 기존의 석유 또는 석유제품을 대체하기 위하여 동식물성 기름, 폐식용유, 해조류, 사탕수수, 바이오매스 등을 활용하여 생산한 바이오연료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면서 이를 온실가스의 감축수단으로 활용하려 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재생에너지에 석유를 대체하기 위한 바이오연료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p> <p>이에 재생에너지의 정의에 석유를 대체하기 위한 바이오연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에너지를 포함시킴으로써 바이오연료의 사용을 확대하여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2호아목)</p>	2023-03-14
	<p>•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양의원영의원 등 15인)」</p> <p>우리나라는 화석연료 기반의 대용량 발전소에서 전력을 생산하고, 멀리 떨어진 수요지에 장거리 송전망을 통해 전력을 공급하는 중앙집중형 전력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장거리 송전을 통해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과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하는 분산에너지의 보급과 확대가 필요함</p> <p>동해안 지역에 대규모 화력발전소가 신규 건설되었지만, 송전망 건설이 적시에 되지 않아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는 상황임. 장거리 송전망을 통한 전력의 공급은 한계에 봉착하였으며 수요지 인근의 분산에너지의 확대를 통해 안정적이고 균형있는 에너지 공급 기반을 마련해야 함. 분산에너지가 확대되면 배전망 단위에서 출력제어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음</p> <p>이에 출력제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출력제어 현황을 예측하여 분산에너지 사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또한 부득이한 상황에서 발생한 출력제어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보상하여 분산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p>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분산에너지, 분산에너지사업, 전력계통영향평가, 분산에너지 편익 등에 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함 (안 제2조)</p>	2023-03-14

소관위	법률안	제안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하여 기본계획 등을 수립·시행하고, 분산에너지 활성화 수준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규정함 (안 제5조 및 제6조) ③ 분산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분산에너지 통합발전소사업 등 분산에너지사업자 요건과 시장 참여 범위를 명시함 (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④ 분산에너지가 긴요한 지역에 대해 에너지사용량 일부를 분산에너지로 충당하도록 의무화하고, 할당된 의무설치량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함 (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⑤ 분산형전원 증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출력제어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배전사업자는 출력제어 조치의 결과, 사전 예측한 정보를 공개하고, 출력제어 조치에 대해서 정당하게 보상하도록 규정함 (안 제17조부터 제23조까지) ⑥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하여 배전사업자에 대한 검사·감독 업무 등을 수행함 (안 제24조) ⑦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지역을 지정·고시하고, 지역 내 일정규모 이상의 전기사용을 하려는 자는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전력계통영향평가서를 제출하도록 함 (안 제25조 및 제26조) ⑧ 계통영향사업자는 전력계통영향평가 결과 이행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를 확인하여 이행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함 (안 제27조부터 제34조까지) ⑨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하여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거나 필요시 산업부에서 직접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지정함 (안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 ⑩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안에서 분산에너지사업자는 직접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판매할 수 있고, 부족한 전력 또는 남는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6조) ⑪ 분산에너지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하여 전기 요금에 대해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안 제48조) ⑫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지원사항을 마련하고, 분산에너지진흥센터 및 지원센터의 지정 근거를 마련함 (안 제49조부터 제59조까지) 	
보건복지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2인)」 <p>현행법은 의료광고에 대하여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자율심의기구는 의료광고 심의를 할 때 적용하는 심의 기준을 상호 협의하여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p>	2023-03-13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p>그러나 법률에 심의 기준을 상호 협의해야 하는 상대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일부 자율심의 기구에서는 법률의 취지에 맞지 않게 의료광고 이해관계자와 심의 기준을 협의하고 있는 상황임</p> <p>또한 의료광고를 심의하는 자율심의기구에서 의료광고가 법령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관한 모니터링 업무까지 수행하고 있어 의료광고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p> <p>이에 의료광고 심의 기준은 자율심의기구 상호 간에 협의하여 마련하도록 하고, 자율심의기구의 심의 기준이 의료경쟁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 기준의 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의료광고 모니터링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행하게 함으로써 의료광고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57조, 제57조의3)</p>	2023-03-13
환경노동위원회	<p>•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0인)」</p> <p>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 적용과 관련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 10년에 걸친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제도개선 요구 중 일부를 반영해 원래 산재보험 적용 조건이었던 ‘전속성 요건’을 삭제해 산재보험 적용 범위를 넓힘</p> <p>그러나 산재보험법에는 노무제공자의 정의를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한 노무제공’이라고 규정하면서, 개인과 직접 노무제공 관계를 맺는 노동자들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형평성에 많은 지적이 있음</p> <p>이에 개인과 직접 노무제공 관계를 맺는 노동자들의 산재보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사람의 사업을’로 규정된 노무제공자의 정의를 ‘사람의 사업을 혹은 사람을’로 개정해 산재보험에 소외됐던 노동자들의 권리를 제고하고자 함 (안 제91조의15제1호)</p>	2023-03-09
	<p>•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의원 등 11인)」</p> <p>현행법은 채용절차에서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여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2014년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p> <p>이러한 현행법의 제정으로 채용 과정에서의 불공정성에 대한 우려는 상당부분 불식되었다는 평가도 있으나 많은 구직자, 특히 청년 구직자들은 아직도 채용 과정의 공정성에 대하여 많은 우려를 제기하고 있음</p>	2023-03-13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p>이에 구인자로 하여금 채용 단계별 심사 결과를 구직자들에게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따른 채용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구직 과정에서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안 제8조 등)</p>	
국토교통 위원회	<p>•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의원 등 15인)」</p> <p>현행법은 자동차의 안전을 담보하고 자동차 구매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차 구입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km 이내)에 반복된 하자 발생 시 자동차제조사에 교환·환불을 요청하고 제조사와 분쟁 발생 시에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소하도록 하고 있음</p> <p>그런데 중재 제도는 교환·환불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중재 절차를 개시할 수 있어 요건 미충족 등으로 각하 또는 기각된 사례가 많고 위원회의 최종 결정까지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며, 결정 내용도 교환 또는 환불만 가능하여 자동차 구매자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임</p> <p>이에 중재 제도 이외에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동차 구매자의 신청으로 조정 절차를 개시하고 위원회가 적극적인 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속하고 유연한 분쟁 해결이 가능한 조정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자동차 구매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분쟁해결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안 제47조의13 신설 등)</p>	2023-03-08
	<p>•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의원 등 13인)」</p> <p>현행법에서는 출고된 자동차의 장착된 부품을 대체하는 부품 중에서 인증기관으로부터 성능과 품질을 인증받은 대체부품을 인증대체부품으로 규정하고, 자동차정비업자는 자동차 정비 시에 정비의뢰자에게 인증대체부품을 이용한 정비가 가능함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의무화하여 자동차 운행의 안전성을 담보하고 있음</p> <p>그런데 현행법에서 자동차부품을 신부품(新部品), 중고품, 재생품 또는 대체부품으로 나누어 규정함으로써 대체부품이 신부품이 아닌 중고품, 재생품 등 품질이 떨어지는 부품으로 오해를 불러일으켜 소비자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p> <p>이에 인증기관으로부터 성능 및 품질을 인증받은 대체부품에 대한 표현을 현행 인증대체부품에서 품질인증부품으로 변경하고, 신부품의 정의를 자동차제작사가 주문하여 생산한 부품뿐만 아니라 품질인증부품까지 포함하여 규정함으로써 대체부품에 대한 소비자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관련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안 제30조의5제4항 등)</p>	2023-03-10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기관	주요 일정		비고
상임위	아래 【별첨1】 참조		
국회사무처	3/16(목) 07:30	「국회 최고위 미래전략과정」 제5강 - 반도체 지정학과 패권 전쟁	유튜브
국회도서관	3/15(수)	금주의 서평 제619호 발간 - 집 없는 서민의 주거권	
	3/17(금)	「국회도서관 웹진」 제59호 발간 - 국회도서관 제1차 국가전략 콜로키움 개최 등	
예산정책처	3/13(월)	「2023 대한민국 재정」 발간 - 제1부 재정의 이해 - 제2부 2023년도 재정 현황 - 제3부 상임위 소관 부처별 재정 현황	
	3/14(화)	「NABO 재정추계&세제 이슈」 제22호 발간	
입법조사처	3/13(월)	「이슈와 논점」 발간 - 합리적인 금리산정을 위한 정책 동향 및 쟁점	

[별첨1] 제404회 국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안)

위원회	일시	구분	내용
기재위	3/14(화) 10:00	전체회의	- 재정준칙 도입에 관한 공청회
	3/15(수) 10:00	경제재정소위	- 법안 심사
	3/16(목) 10:00	조세소위	- 법안 심사
교육위	3/16(목) 10:00	법안심사소위	- 법안 심사
과방위	3/15(수) 10:00	과학기술원자력 법안심사소위	- 법안 심사
	3/15(수) 14:00	정보통신방송 법안심사소위	- 법안 심사
외통위	3/13(월) 10:00	전체회의	-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발표 등 긴급현안보고
국방위	3/17(금) 10:00	전체회의	- 법안 의결, 현안보고
행안위	3/13(월) 10:00	전체회의	- 업무보고
산자중기위	3/16(목) 10:00	전체회의	- 법안 상정
환노위	3/15(수) 10:00	환경법안심사소위	- 법안 심사
국토위	3/14(화) 10:00	교통법안심사소위	- 법안 심사
	3/16(목) 10:00	국토법안심사소위	- 법안 심사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일자	제목	주최	장소
3/13(월) 14:00	반도체 산업 세금 감면이 정당?	장혜영 의원실, 참여연대 세재정책개혁센터	의원회관 7간담회실
3/14(화) 10:00	커넥티드 모빌리티 산업 발전전략 포럼	홍영표·김진표·홍익표·추경호 의원실 등	의원회관 3세미나실
3/14(화) 10:00	학교 금융교육 활성화 어떻게 할 것인가?	홍성국 의원실	의원회관 8간담회실
3/14(화) 13:30	대학의 공유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적 해결 방안 모색	이태규 의원실,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등	의원회관 8간담회실
3/14(화) 14:00	기후위기시대, 국가유산 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류호정 의원실	의원회관 7간담회실
3/14(화) 14:00	한국 와이퍼 대량해고사태를 통해 살펴본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방향 국회토론회	이은주·강민정 의원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의원회관 3간담회실
3/15(수) 13:20	K-뷰티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토론회	최혜영 의원실	의원회관 4간담회실
3/15(수) 14:00	미래지향적 에너지 교육을 위한 제언 -4차산업시대 에너지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정경희 의원실, (사)사실과 과학 네트워크	의원회관 3세미나실
3/15(수) 14:00	미세플라스틱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이수진(비) 의원실, (사)소비자기후행동 등	국회박물관 강당
3/15(수) 14:00	안성 반도체 대기업 유치 자문위원회 출범식	김학용 의원실	폴리텍대학
3/16(목) 10:00	탄소중립 목표 이행을 위한 농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 방안 모색	정희용 의원실	의원회관 2세미나실
3/17(금) 10:30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 성과와 발전 방향	김민석 의원실	의원회관 9간담회실
3/17(금) 14:00	미래 감염병 대비 의료대응 체계 강화 토론회	최연숙 의원실	의원회관 2소회의실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2] 지난 주 뉴스레터(제176호) 중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 첨부

* 해당 내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 소속기관>

기관	주요 일정		비고
국회사무처	3/6(월)	「최근 현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 (제4호)」 발간	
국회도서관	3/7(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16호 발간 - 미국의 국가핵심역량수호법(안)	
	3/9(목)	「현안, 외국에선」 제55호 발간 - 미국의 교육저축계좌(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교육재정 활용 사례)	
예산정책처	3/6(월)	「NABO Focus」 제57호 발간 - 2023년 시행 지방세 세법개정안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입법조사처	3/6(월)	「이슈와 논점」 발간 - 21대 국회 의회외교 현황과 한미 의회외교 활성화 방안	
	3/9(목)	「이슈와 논점」 발간 - 프랑스 의회의 선거제도	
	3/10(금)	「이슈와 논점」 발간 - 마약범죄 수사·기소·처벌에서의 쟁점과 과제	
미래연구원	3/6(월)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63호 발간 - 우리나라 혁신체제의 새로운 전환점 : 학습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주요 부문별 전략과제 도출	

<국회의원실>

일자	제목	주최	장소
3/6(월) 14:00	<u>인터넷 포털과 언론 상생</u>	권성동·홍석준 의원실	의원회관 2소회의실
3/7(화) 10:00	<u>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토론회</u>	이종배·김정재· 김종민 의원실, 국민일보	의원회관 3세미나실
3/7(화) 13:30	<u>시대적 변화에 따른 장기기증 제도의 발전 방 향 모색</u>	서영석·정춘숙·강훈식· 최영희 의원실 등	의원회관 9간담회실
3/8(수) 10:00	<u>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3월 정책세미나</u> - 인공지능 시대의 우리의 전략	이원욱·김석기 의원실,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의원회관 1소회의실
3/8(수) 14:00	<u>ESG생태계 전환, ESG기본법 제정으로!</u>	이원욱 의원실	의원회관 5간담회실
3/8(수) 14:00	<u>민주당 과학기술혁신특별위원회 발대식 및 토 론회</u>	조승래 의원실	의원회관 3세미나실
3/9(목) 10:00	<u>자율주행 핵심기술 국제선도를 위한 발전방향 정책세미나</u>	김성원 의원실, 산업통상자원부 등	의원회관 3세미나실
3/9(목) 14:00	<u>윤석열정부의 노동개혁 진단과 당면 과제</u>	김형동 의원실, 한반도선진화재단 등	의원회관 4간담회실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For Questions or Comments

- | | | |
|----------------------------------|----------------|------------------------|
| • 백대용 변호사 | T. 02-316-4630 | E. dybaek@shinkim.com |
| • 박현주 (Hyunju Helen Pak) 외국변호사 | T. 02-316-4212 | E. hpak@shinkim.com |
| • 김성범 변호사 | T. 02-316-4432 | E. sbkim@shinkim.com |
| • 홍정아 (Claudia Hong) 외국변호사 | T. 02-316-4487 | E. cahong@shinkim.com |
| • 안현정 변호사 | T. 02-316-1637 | E. hjeahn@shinkim.com |
| • 방세희 변호사 | T. 02-316-1773 | E. shbang@shinkim.com |
| • 노지은 변호사 | T. 02-316-2573 | E. jeroh@shinkim.com |
| • 성재열 변호사 | T. 02-316-1777 | E. jysung@shinkim.com |
| • 조성환 변호사 | T. 02-316-2596 | E. suhcho@shinkim.com |
| • 박건백 변호사 | T. 02-316-4670 | E. gbapark@shinkim.com |
| • 나인선 변호사 | T. 02-316-1795 | E. isna@shinkim.com |
| • 나인경 변호사 | T. 02-316-7251 | E. ikra@shinkim.com |
| • 김은혜 변호사 | T. 02-316-1736 | E. ehkim@shinkim.com |
| • 서치원 변호사 | T. 02-316-7225 | E. cwseo@shinkim.com |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